

# 강원관광대학 계절학기 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 8조 2항 및 제 9조에 의거 계절학기 개설 및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개설시기)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.

제 3 조 (수업시간)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교과목별로 1학점 당 16시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수강대상)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해당학기 등록
2. 복학자, 편입학자
3. 소정의 학점 미 취득자

제 5 조 (개설과목) 1. 개설과목은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,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아니한다.

2. 수강신청과목은 계절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) 하계 계절학기

- 가. 전공교과목 : 수강신청일 현재 미 취득 과목 중 2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
- 나. 교양교과목 : 수강신청일 현재 미 취득 교과목

2) 동계 계절학기 : 수강 신청일 현재 미 취득 교과목

제 6 조 (수강신청) 1.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개시 1주전까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2. 수강신청은 6학점까지 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수강료) 계절학기 수강을 허가 받은 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하며 수강료는 학점단위로 징수하고 다음과 같다.

1. 1학점~3학점: 직전학기 등록금의 1/6
2. 4학점~6학점: 직전학기 등록금의 1/3

제 8 조 (수업)

1. 계절학기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
2. 수업시간의 1/4이상 결석자는 성적을 평가할 수 없다.

제 9 조 (성적)

1. 계절학기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
2. 계절학기 취득성적으로 인한 장학금 혜택 등의 사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3.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해당학기의 평균성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시험) 계절학기의 시험은 수업최종일에 시행한다.

제 11 조 (교과목 선정 및 공고) 계절학기 개설교과목은 학과장 및 담당교수가 대상 인원을 사전 파악하여 교과목을 선정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장의 재가를 얻어 개강 2주 전에 공고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6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.